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4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김정호·박선원·어기구

허종식 • 최기상 • 박 정

윤후덕 · 임미애 · 이연희

이훈기 • 이수진 • 정성호

신영대 • 전재수 • 김남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 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 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 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 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경제적 착취"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사표현에 기초하여 노인의 소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한한다.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 제39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22(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노인 이 요청한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노인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와 관련된 통지·해제·내역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2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는 "노인"으로 본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예방을 위하 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제1조의2(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경제적 착취"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불완전한 의
	사표현에 기초하여 노인의 소
	득·재산·임금 등을 빼앗거
	나 이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
	하는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
	<u>다.</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생 략)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17호</u>
	에 해당하는 자는 경제적 착취
	에 해당하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한한다.

1. ~ 16. (생 략) <u><신 설></u>

③ ~ ⑥ (생 략) <u><신 설></u>

- 1. ~ 16. (현행과 같음)
-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 업자등(그 임직원을 포함하 며, 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39조의22(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노인이 요청한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것으로의심되는 등 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노인의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를 할수 있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 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 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와 관련된 통지·해제·내역의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는 "노인"으로본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